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하여 평정단위를 임용권자가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하여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여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도달한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적용하여 공직사회 개방성을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핵심 인사교류 직위 등 근무성적평정 단위 분리 의무화 (안 제5조)

핵심 국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대응을 위해 임용된 핵심 인사교류 공무원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분리하여 평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 정비 (안 제31조)

중앙과 지방정부, 기업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위해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하는 공무원이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에도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영 제27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경우”를 “경우(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기간을 포함하여 공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 단위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무성적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2호의 개

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생략) <u><신설></u>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영 제27조의5제1항제2호 후단에 따라 인사교류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가 제1항에 따른 평정단위를 분리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명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한 내용은 해당 조정사유 발생 후에 하는 승진임용에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및 조정내역에 대하여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1조(명부의 조정 및 삭제) ① ----- ----- ----- -----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u>경우</u> 3. ~ 7. (생략) ② (생략)	2. ----- ----- <u>경우(영 제33조 제3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 연수 단축기간을 포함하여 공 무원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경우를 포함한다)</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